

2019. 2. 14.
유럽사법재판소 제2합의부
C-345/17 판결

판결내용 요약

사실관계

라트비아의 한 개인(원고)은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진술을 하는 동안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비록 이 동영상이 경찰관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경찰관들과 그들의 경찰서에서의 활동을 담고 있었고, 라트비아 국가정보보호국은 원고가 정보주체인 경찰관들에게 정보처리의 목적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에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원고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당 동영상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 공무원, 즉 공인의 업무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라트비아 최고법원은 본 사건이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의 '오로지 보도목적으로만' 수행되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질의하였다.

법원의 판단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영상 내용으로부터 오로지 대중에게 정보, 의견 또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도출되는 경우 그러한 개인정보처리가 보도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즉, 언론사 기자가 아닌 개인이 촬영한 영상도 개인정보보호지침상 언론의 보도활동과 같은 예외,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유럽 사법재판소 2019년 2월 14일 판결 (제2합의부)

"선결적 판단을 위한 요청 - 개인정보처리 -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 제3조 - 적용 범위 - 행정소송 관련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 - 동영상 웹 사이트에 공개 - 제9조 - 오로지 보도 목적으로만 개인정보처리 - 개념 - 의사표현의 자유 - 사생활 보호"

사건번호 C345/17

2017년 6월 1일의 결정에 따라 라트비아 최고법원에 의해 신청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AEUV) 제267조에 따른 선결판단 요청은 2017년 6월 12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각 당사자는 세르게이즈 부이비즈(Sergejs Buivids)와 라트비아 국가정보보호국(Datu valsts inspekcija)이다.

유럽 사법재판소 (제2합의부)

제2합의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유럽 사법재판소장 K. Lenaerts, 판사 A. Prechal, C. Toader 및 A. Rosas (보고관)과 M. Ilešič의 협력 하에

법률고문관: E. Sharpston,

부서장: M. Aleksejev

2018년 6월 21일의 서면절차 및 구두심리에 근거하여

다음에 대한 고려 하에

- 스스로 변론을 수행하는 부이비즈
- I. Kucina, G. Bambāne, E. Petrocka-Petrovska 및 E. Plaksins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라트비아 정부
- M. Smolek, J. Vláčil 및 O. Serdula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체코 정부

- G. Palmieri가 M. Russo, avvocato dello Stato의 도움을 받아 대리인으로 대표 하는 이탈리아 정부
- G. Eberhard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정부
- B. Majczynad가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폴란드 정부
- L. Inez Fernandes, M. Figueiredo 및 C. Vieira Guerra 가 대리인으로 대표하 는 포르투갈 정부
- A. Falk, C. Meyer-Seitz, P. Smith, H. Shev, L. Zettergren 및 A. Alriksson이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스웨덴 정부
- D. Nardi 및 I. Rubene이 대리인으로 대표하는 유럽연합 위원회

2018년 9월 27일 회의에서 법률고문관의 최종의견 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1. 선결적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자연인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ABl. 1995, L 281, 31면), 특히 동 지침 제9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2. 이는 세르게이즈 부이비즈에 의해 Datu valsts inspekcija(라트비아 국가정보보호 국)을 상대로 하여, 그가 라트비아 경찰서에서 행정소송 관련 진술을 하는 동안 자 신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을 웹사이트 www.youtube.com에 공개했기 때문에, 국 내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해당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 송에서 기인한다.

법적 범위

유럽연합법률

3.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자연인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2016년 4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유럽연합 규정 2016/679 (ABL. 2016, L 119, 1면)에 의해 폐지된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의 대상은 제1조에 따라 기본권 및 자유권의 보호와 특히 개인정보작성의 경우 자연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벽 제거였다; 판단근거인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 14, 15, 17, 27 및 37조는 다음과 같다.

(2) 정보처리시스템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연인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그의 기본권과 자유권 특히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 무역의 발전 및 사람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

(14) 개인의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의 수집, 전송, 변경, 기록, 저장 또는 배포 기술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와 관련된 현재의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지침은 이러한 정보의 처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5)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이것이 자동화되거나 또는 처리와 관련된 정보가 컴퓨터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식별되는 개인 관련적 기준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

(17) 특히 시청각 부문에서의 보도, 문학 또는 예술적 목적을 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와 관련하여 동 지침의 원칙은 제9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27) 정보보호는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자동화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사실 보호는 사용된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우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동처리의 경우 동 지침은 컴퓨터 파일만을 기록하며, 비정형화된 파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

(37) 특히 시청각 부문에서 보도, 문학 또는 예술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이것이 사람의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 특히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

명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권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전달할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동 지침의 특정 조항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고려 하에, 정보처리의 합법성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의 경우 ... 필요한 예외 및 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의무에 해당한다...

4.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동 지침의 의미에서 이하가 정의된다:

- a)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 ("정보주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특히 고유번호 또는 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통해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b) '개인정보처리'('처리')란 자동화된 절차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 또는 수집, 기록, 구성, 저장, 각색 또는 변경, 검색, 참조, 사용, 전송에 의한 전달, 배포 또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제공, 결합 또는 연결 및 차단, 삭제 또는 파기와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 d) '처리책임자'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구를 의미한다. 개인데이터처리의 목적과 수단이 개별국가 또는 [유럽연합] 법률,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나 그 임명에 관한 특정 기준은 개별국가 또는 [유럽연합]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5. 제3조 동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 지침은 전부 또는 일부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파일에 저장되거나 저장되어야 하는 자동화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2) 동 지침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리스본 조약의 발효 이전에 적용되었던] 유럽연합조약 V 및 VI에 따른 활동과 같이 공동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 및 공공안보, 방위, 국가안보(처리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제적 복지 포함) 및 형법 분야에서의 국가활동과 관련된 모든 처리;

- 자연인에 의한 개인 또는 가족활동만을 위해 수행되는 행위

6. 지침 제7조는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 f) 처리가 처리책임자 또는 데이터가 전송된 제3자가 행사하는 정당한 이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제1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과 자유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침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회원국은 오로지 보도, 예술 또는 문학적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규정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 장과 제4항 및 제6장의 제외 및 예외를 규정한다."

라트비아 법률

8. 2000년 3월 23일자 Fizisko personu datu aizsardzības likums (자연인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Latvijas Vēstnesis*, 2000, Nr. 123/124, 이하: 정보보호법) 제1조에 따라 동법은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특히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자연인의 개인적 영역의 보호를 보장한다.

9. 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10. 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를 수집, 저장, 기록, 저장, 구성, 변경, 사용, 전송, 전달 및 처리 및 그 차단 또는 삭제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과정으로 정의한다.

11. 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은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처리와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 적용되어야 한다:

- 처리책임자가 라트비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보처리가 라트비아 공화국 국경 외에서, 그러나 국제협정에 따라 이에 속하는 지

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라트비아 공화국에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단 이러한 시설이 라트비아 공화국 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정보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자연인에 의한 개인 또는 가정 내지 가족활동의 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개인정보처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3. 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라 상충되는 법적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Par presi un citiem masu informācijas līdzekļiem likums (언론 및 기타 대중정보매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예술적 또는 문학적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동법 제7 내지 제9조 및 제21조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4. 정보보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것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처리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 회사 또는 처리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개인정보처리가 의도하는 목적

Ausgangsverfahren und Vorlagefragen

15. 부이비즈(Buivids)는 라트비아 경찰서에서 행정소송 관련 진술을 하는 동안 동영상을 촬영했다.

16. 그는 이와 같이 녹화된 동영상(이하: 해당 동영상), 경찰관들과 그들의 경찰서에서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웹사이트(www.youtube.com)에 공개했다. 동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비디오를 공개하고, 보고 또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7. 이 영상이 공개된 후 국가정보보호국은 2013년 8월 30일 결정에서, 부이비즈가 경찰관들에게 동 조항에 따라 정보주체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처리의 목적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부이비즈는 또한 국가정보보호국에 해당 동영상을 녹화한 목적과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

한 목적에 관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정보보호법에 의거함을 입증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가정보보호국은 부이비즈에게 www.youtube.com과 다른 웹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18. 부이비즈는 Administratīvā rajona tiesa (라트비아 행정법원, 1심 법원)에 국가정보보호국의 결정이 위법하며 그의 관점에서 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해당 동영상 공개는 경찰 측의 불법적 행위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19. 2015년 11월 11일 Administratīvā apgabaltiesa(라트비아 지역 행정법원, 2심 법원)은 Administratīvā rajona tiesa (라트비아 행정법원,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이비즈의 항소를 기각했다.
20. Administratīvā apgabaltiesa(라트비아 지역 행정법원, 2심 법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동영상이 경찰서와 여러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행정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의사소통 및 경찰관, 부이비즈 및 그의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21. 더구나 부이비즈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가 해당 동영상을 공개했는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이비즈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우선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없다. 또한 동영상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사건이나 경찰관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부이비즈가 해당 동영상을 언론 및 다른 기타 대중매체의 의미에서의 보도 목적이거나, 예술적 또는 문학적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보호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
22. 따라서 Administratīvā apgabaltiesa(라트비아 지역 행정법원, 2심 법원)은 부이비즈가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촬영하는 것을 통해, 정보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 부이비즈는 Administratīvā apgabaltiesa(라트비아 지역 행정법원,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Augstākā tiesa (라트비아 최고법원)에 상고하며,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24. 그는 특히 해당 동영상이 경찰서 공무원, 즉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공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정보법의 인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5. 회부법원은 경찰서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촬영하고 녹화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부이비즈의 행위는 지침 제3조 제2항에 언급된 지침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지만, 회부된 사안은 한 번만 녹화가 된 것이고, 부디비즈가 공무 수행 중인, 즉 공권력 대표로서 행위하고 있는 경찰관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Rīgas satiksme (C13/16, EU:C:2017:43) 사건에서 Generalanwalt Bobek의 Schlussantrage 제95번 항목과 관련하여, 회부법원은 주요관심사를 개인정보보호를 정당화하는 것에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의 대규모 처리와 관련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6. 다른 한 편 회부법원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에 있는 "보도목적으로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부이비즈를 기소된 것과 같은 사실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27. 이러한 상황에서 Augstākā tiesa (라트비아 최고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유럽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질문에 대한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이 절차적 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동영상을 웹사이트 www.youtube.com에 공개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하는가?
 2.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은, 언급된 활동이 지침 제9조의 의미에서 보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는가?

선결문제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28. 첫 번째 질문으로 회부법원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3조가 경찰서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경찰관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비디오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동 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29.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은 동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파일에 저장되거나 저장되어야 하는 자동화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30. 동 조항의 의미에서의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조 a에 서의 정의에 따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특히 ... 그의 신체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통해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31.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로 촬영된 사람의 사진은, 이것이 정보주체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한도에서,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조 a의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개념에 해당한다 (2014년 12월 11일 판결, Ryneš, C212/13, EU:C:2014:2428, 22문단 참조).
32. 이 경우 회부된 결정에서 원용되는 것은, 해당 동영상에 경찰관이 보여지고 파악되며, 따라서 이렇게 촬영된 사람의 영상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조 a의 의미에서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33. "개인정보처리"는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조 b에 따르면 "모든 ... 과정 또는 수집, 기록, 구성, 저장, 각색 또는 변경, 검색, 참조, 사용, 전송에 의한 전달, 배포 또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제공, 결합 또는 연결 및 차단, 삭제 또는 파기와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34. CCTV와 관련하여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미,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 b 및 제 3조 제1항에 따라 CCTV의 하드 드라이브인 연속저장장치에 사람의 동영상을 녹화하는 것이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12월 11일 판결, Ryneš, C212/13, EU:C:2014:2428, 23 문단 참조).
35. 유럽 사법재판소의 구두변론에서 부이비즈는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카메라의 메모리인 연속저장장치에 사람을 녹화한 동영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영상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3조 제

1항의 의미에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의미한다.

36.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녹화가 단지 한 번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 행위가 유럽 연합 정보보호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없다. 즉 동 지침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제2조 b의 구문으로부터 도출되는 바와 같이, 동 조항의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37. 더 나아가 유럽 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에 속하는 과정도 또한 이러한 처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3년 11월 6일 판결, Lindqvist, C101/01, EU:C:2003:596, 25 문단 및 2014년 5월 13일 판결, Google Spain und Google, C131/12, EU:C:2014:317, 26 문단 참조).
38.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이 페이지를 업로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페이지에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은 적어도 일부 자동화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3년 11월 6일 판결, Lindqvist, C101/01, EU:C:2003:596, 25 문단 참조).
39.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해당 동영상과 같은 촬영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2조 b 및 제3조 제1항의 의미에서 이러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자동화된 처리를 의미한다.
40.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동 지침은 또한, 두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처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 리스본 조약의 발효 이전에 적용되었던 유럽연합조약 V 및 VI에 따른 활동과 같이 공동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 및 공공안보, 방위, 국가안보 및 형법 분야에서의 국가활동과 관련된 모든 처리를 말한다. 다른 한 편 동 조항은 자연인에 의해 개인 또는 가족활동만을 위해 수행되는 개인정보처리를 배제한다.
41.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는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하고,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이하: 헌장) 제7조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 및 가정생활

보호권 및 헌장 제8조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연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7년 9월 27일 판결, Puškár, C73/16, EU:C:2017:725, 38문단 및 2018년 7월 10일 판결, Jehovan todistajat, C25/17, EU:C:2018:551, 37문단 참조).

42. 원소송과 관련하여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의 촬영 및 공개는 공동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로 간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3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공공안보, 방위, 국가안보 및 형법 분야에서의 국가활동과 관련된 처리로도 간주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언급된 조항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활동이, 개인의 활동영역과 어떠한 연관도 없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모든 특정한 활동이라는 것을 이미 판단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7년 9월 27일 판결, Puškár, C73/16, EU:C:2017:725, 문단 및 거기 인용된 판례 참조).
43. 다른 한편 원소송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처리는 부이비즈가 해당 동영상을 액세스 제한 없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액세스되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공개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오로지 개인 또는 가족활동만을 위해 수행된 것이 아니다 (2003년 11월 6일 판결, Lindqvist, C101/01, EU:C:2003:596, 47문단,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44문단, 2014년 12월 11일 판결, Ryneš, C212/13, EU:C:2014:2428, 31 및 33문단 및 2018년 7월 10일 판결, Jehovan todistajat, C25/17, EU:C:2018:551, 42 문단 참조).
44. 또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동영상이 촬영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처리를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의 적용범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5. 법률고문관이 최종의견 29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지침은 공무원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가 동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46. 더 나아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정보가 직업적 활동의 맥락 내에 있기 때문

에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5년 7월 16일 판결, ClientEarth und PAN Europe/EFSA, C615/13 P, EU:C:2015:489, 30 문단 및 거기 인용된 판례 참조).

47.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3조는,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 경찰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 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48. 두 번째 질문으로 회부법원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가 원소송과 같은 사실관계, 즉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 경찰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동 조항의 의미에서의 보도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49. 우선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동 지침의 조항은 그 목적과 이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51문단 및 거기 인용된 판례).
50. 제1조에서 도출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은 회원국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특히 이러한 정보 처리의 경우 자연인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위에 언급된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과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의 판단이유 37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제9조가 목표로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본권, 즉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회원국의 의무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52

문단 내지 54문단 참조).

51.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미,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부여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저널리즘에 속하는 관련 개념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56문단 참조).
52. 따라서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의 준비작업에서 도출되는 것은, 제9조에 규정된 면제 및 예외는 미디어 회사 뿐만 아니라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58문단 참조).
53.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보도활동"은 정보, 의견 또는 사상을 전송수단에 관계없이 일반공중에게 전파할 목적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61문단 참조).
54. 회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부이비즈에 의해 행해진 개인정보처리가 그러한 목적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심사해야 하지만, 유럽 사법재판소는 회부법원이 내려야 하는 판결에 필요한 해석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55. 따라서 동 판결 52 및 53문단에 인용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이비즈가 직업 언론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동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56. 특히 부이비즈가 이러한 웹사이트, 사안의 경우 웹사이트 www.youtube.com에 해당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게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수행한 이러한 개인정보처리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의 의미에서 "오로지 보도 목적으로만"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57.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 및 정보전송 수단의 진화와 다양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 종이나 라디오 전파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인지 아니면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인 매체인지 관계 없이- 처리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가 "오로지 보도 목적을 위한"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

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60문단 참조).

58. 물론, 법률고문관이 최종의견 55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정보가 "보도 활동"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에 규정된 배제 및 예외가 적용된다.
59. 해당 사안에서 회부법원은 해당 동영상의 촬영 및 공개가 오로지 일반공중에게 정보, 의견 또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만을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심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62문단 참조).
60. 이 경우 회부법원은 무엇보다도, 해당 동영상의 부이비즈의 증언에 따르면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 측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61.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 관행의 확인이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의 적용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62. 반면에 해당 동영상의 촬영 및 공개가 오로지 일반공중에게 정보, 의견 또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원심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 정보의 처리는 "오로지 보도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63. 더 나아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에 규정된 면제 및 예외는 두 가지 기본권, 즉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서로 조화시키기 위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8년 12월 16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und Satamedia, C73/07, EU:C:2008:727, 55문단 참조).
64. 이 두 가지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는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의 제2장, 제4장 및 제6장에 규정된 정보보호와 관련된 예외와 제한을 받드시 필요한 제한일 것을 요구한다.
65. 사생활 및 가정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에 관한 헌장 제7조는,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권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이하 EMRK) 제

8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7조는 헌장 제52조 제3항에 따라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의한 해석에서 EMRK 제8조 제1항과 동일한 의미와 범위를 가진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17일 판결, WebMindLicenses, C419/14, EU:C:2015:832, 70문단). 이는 헌장 제11조 및 EMRK 제10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 5월 4일 판결, Philip Morris Brands u. a., C547/14, EU:C:2016:325, 147문단 참조).

66. 이와 관련하여 동 판례에서 도출되는 것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공익적 토론에의 기여, 영향을 받는 인물의 악명 정도, 뉴스보도의 주체, 정보주체의 이전의 태도, 공개의 내용, 형태 및 결과, 정보를 획득한 방식과 상황 및 그 정확성 등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관련 기준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EGMR의 의미에서 2017년 6월 27일 판결,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und Satamedia Oy/Finland, CE:ECHR:2017:0627JUD000093113, 165문단 참조). 또한 처리책임자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을 경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67. 해당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출된 파일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정보주체에 촬영과 목적을 알리지 않고 이루어진 해당 동영상의 촬영 및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즉 비디오에 나오는 경찰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68. 해당 동영상의 촬영 및 공개가 오로지 일반공중에게 정보, 의견 또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회부법원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에 규정된 면제 및 예외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및 이러한 면제 및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제한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69.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가 원심과 같은 사실관계, 즉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 경찰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러한 촬영 및 공

개가 오로지 일반공중에게 정보, 의견 또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동영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의미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로지 보도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회부법원이 심사해야 한다.

비용

70. 원심 당사자들에 대해 절차는 회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분쟁조정에 해당한다; 비용은 따라서 유럽 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다른 참가인이 유럽 사법재판소에 진술서를 요청할 때 발생한 비용은 상환될 수 없다.

이러한 근거로 유럽 사법재판소(제2합의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1995년 10월 24일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자연인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3조는,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 경찰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 지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 2..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제9조는 원심과 같은 사실관계, 즉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서에서 경찰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사용자가 동영상을 보내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웹사이트에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러한 촬영 및 공개가 오로지 일반공중에게 정보, 의견 또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동영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의미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로지 보도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회부법원이 심사해야 한다.